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항목

2019. 3.

1. 평가기관 현황

기 관 명		기관구분	☐ 석면조사 ☐ 완료후 농도측정 ☐ 석면배출농도측정
소 재 지	()		
대 표 자			
전화번호		총인원 (지정인력)	가호__명, 나호__명, 다호__명
관할(지)청		지정번호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 변경지정일 :		

2. 평가일자

평 가 일	2019년 월 일	평 가 일(2차)	2019년 월 일
-------	---------------------	-----------	---------------------

3. 평가결과

총 점	점	등 급	
A. 운영 체계	/ 점	B. 업무성과	/ 점

4. 평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에 근거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평가반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반장				
평가반원				
평가반원				

☐ 평가 대상기관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책임자			
담당자			

5. 석면조사기관 평가항목 총괄표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합 계					1,000
A 운영 체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30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30
			1.3	문서관리체계	3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50
			2.2	관련분야 경력 보유 수준	50
			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3.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의 적정성	50
			3.2	장비 추가 확보	30
			3.3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실시	30
			3.4	지역시료채취펌프 점검 및 정상가동	20
			3.5	시약 및 표준시료의 구비 및 보관의 적정성	2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채취 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15~ -80
			4.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건별 -2점, 최대 -20점)	-2~ -2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포함)
B 업무 성과	소 계				600
	B.1	업무수행 충실성	1.1	기관의 독립성	60
			1.2	업무수행 자료 및 기록물 작성·관리	30
			1.3	조사보고서 및 농도측정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적정성	20
			1.4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분석방법 숙련도	30
			1.5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10
			1.6	개인보호구 구비 및 사용	20
			1.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10
	B.2	석면조사결과 신뢰도	2.1	석면조사업무 매뉴얼 문서화	50
			2.2	시료채취 방법의 적정성	80
			2.3	시료채취 수 준수	20
			2.4	시료채취 전·후 유량보정 수행 및 결과반영	30
			2.5	석면농도 측정방법의 적정성	70
			2.6	작업완료의 확인 실시	20
			2.7	석면분석 방법의 적정성	80
	B.3	분석능력 신뢰도	3.1	기관의 석면분석 정도관리 결과	40
	B.4	업무수행 실적	4.1	석면조사 업무수행 실적	20
	B.5	고객만족도	5.1	석면조사 사업장 만족도	10

6. 석면조사기관 업무형태 별 평가방법

- 5가지 유형의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업무분야 총점을 1,000점 만점으로 보정하여 최종 평가점수 반영

[업무 수행 분야별 배점 현황]

구분	기관별 업무분야	배점	제외점수	총점	평가 제외 문항
①	석면조사	1,000	130	870	B2.3.2/B2.4~2.6
②	석면배출농도측정(석면안전관리법)	1,000	90	910	B2.2.1/2.2.2/2.3.1 B2.3.2/B2.6
③	완료후 농도측정(산업안전보건법)	1,000	60	940	B2.2.1/2.2.2/2.3.1
④	완료후 농도측정+석면배출농도측정	1,000	60	940	B2.2.1/2.2.2/2.3.1
⑤	석면조사+석면배출농도측정	1,000	30	970	B2.3.2/B2.6
⑥	석면조사+완료후 농도측정	1,000	-	1,000	-
⑦	석면조사+완료후 농도측정+석면배출농도측정	1,000	-	1,000	-

☞ 보정방법 : 최종보정점수 = 평가점수/ 업무분야 총점 × 1,000

[세부 평가 문항별 평가제외 문항]

분 야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평가제외 (구분)
B 업무성과 (석면조사결과 신뢰도)	B.2.2.1	석면조사의 예비조사 실시	20점	② ③ ④
	B.2.2.2	균질부분의 구분과 석면함유의 적정추정	30점	② ③ ④
	B.2.3.1	고형시료 채취시 최소시료 채취 수 준수	10점	② ③ ④
	B.2.3.2	농도 측정시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	10점	① ② ⑤
	B.2.4	유량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30점	①
	B.2.5.1	석면농도 측정 기록물	50점	①
	B.2.5.2	현장 공시료	20점	①
	B.2.6	작업완료의 확인 실시	20점	① ② ⑤

7.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A. 운 영 체 계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90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30
1.2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30
1.3	문서관리체계		3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16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50
2.2	관련분야 경력 보유 수준		50
	1 기술책임자의 경력		15
	2 조사자의 경력		15
	3 분석자의 경력		20
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50
3.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의 적정성		50
	1 분석실험실 확보 및 장비의 유지관리지침 문서화		20
	2 장비대장의 작성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15
	3 장비의 관리책임자 지정		15
3.2	장비 추가 확보		30
3.3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실시		30
	1 현미경의 점검 및 정상 가동		10
	2 흡후드의 점검 및 정상 가동		10
	3 유량보정기의 교정		10
3.4	지역시료채취펌프 점검 및 정상가동		20
3.5	시약 및 표준시료의 구비 및 보관의 적정성		20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가·감점)			
4.1	평가기간 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의 정부포상 수여 실적 (대통령:5,총리:4,장관:3,이사장:2)		+10
4.2	평가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 15점, 최대 -80점)		-15 ~-80
4.3	평가기간 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 - 2점, 최대 -20점)		-2 ~-20
A.5 종합화 (가점)			
5.1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포함, 동일기관 +0.5점, 타기관 +1점)		+1 ~+10

B. 업 무 성 과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B.1 업무수행 충실성			180
1.1	기관의 독립성		60
1.2	업무수행 자료 및 기록물 작성·관리		30
1.3	조사보고서 및 농도측정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적정성		20
1.4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분석방법 숙련도		30
1.5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10
1.6	개인보호구 구비 및 사용		20
1.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10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B.2 석면조사결과 신뢰도			350
2.1	석면조사업무 매뉴얼 문서화		50
2.2	시료채취 방법의 적정성		80
	1 석면조사의 예비조사 실시		20
	2 균질부분의 구분과 석면 함유의 적정 추정		30
	3 시료의 보존		30
2.3	시료채취 수 준수		20
	1 고형시료 채취 시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		10
	2 농도측정 시 최소 시료 채취수의 준수		10
2.4	시료채취 전·후 유량보정 수행 및 결과반영		30
2.5	석면농도 측정방법의 적정성		70
	1 석면농도 측정 기록물		50
	2 현장 공시료		20
2.6	작업완료의 확인 실시		20
2.7	석면분석 방법의 적정성		80
	1 분석시료대장의 작성		30
	2 분석 기록물의 작성		50
B.3 분석능력 신뢰도			40
3.1	기관의 석면분석 정도관리 결과		40
B.4 업무수행 실적			20
4.1	석면조사 업무수행 실적		20
B.5 고객만족도			10
5.1	석면조사 사업장 만족도		10

A. 운영체계

A.1. 운영관리 및 업무관리 체계

A.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평가항목 A.1.1.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 계획의 수립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충실히 문서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 30
	문서화된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수요 예측 등 객관적 분석이 결여된 경우 또는 사업 계획에 따른 실행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5
	문서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 합리적인 석면 관련 업무(조사·농도측정·감리 등)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계획(운영 방침 및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평가기간 동안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충실히 문서화된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30” ○ 문서화된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수요예측 등 객관적 분석이 결여된 경우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5” ○ 운영방침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입증이 안 되는 경우 → “0”	

A.1.2.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평가항목 A.1.2.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조직도 및 직무기술서가 충실하게 문서화된 경우	☐ 30
	조직도 및 직무기술서가 문서화되었으나 내용의 일부가 충실하지 않은 경우	☐ 18
	조직도 또는 직무기술서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6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자신의 기술적 업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업무의 흐름에 따른 조직도 및 직무기술서 작성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조직도 및 직무기술서의 내용이 충실하게 문서화된 경우 → “30” ○ 조직도 및 직무기술서가 문서화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 “18” ○ 조직도 및 직무기술서 둘 중 하나 이상이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부실한 경우 → “6”	

A.1.3. 문서관리체계

평가항목 A.1.3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문서관리체계	문서관리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충실하게 이행되는 경우	☐ 30
	문서관리 절차가 일부 부적절하거나 일부 부적절하게 이행되는 경우	☐ 18
	문서관리 절차가 부적절 또는 미수립되었거나 부실하게 이행되는 경우	☐ 6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문서의 승인 및 발행, 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상기 모든 요건을 포함하는 문서관리 절차가 수립되고 이행되는 경우 → “30” ○ 문서관리 절차가 상기 요건 중 1개 이하를 만족하지 않거나, 수립된 문서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18” 예) 누락된 번호가 없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문서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기 요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립된 문서관리가 부실한 경우 → “6”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A.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평가항목 A.2.1.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① 기술사 1명(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10점	9점 이상 ☐ 50
		7점 및 8점 ☐ 40
	② 인력기준 가항목 1명 4점	5점 및 6점 ☐ 30
	③ 인력기준 나항목 1명 2점	3점 및 4점 ☐ 20
	④ 인력기준 다항목 1명 6점	2점 ☐ 10
	합산점수 점수로 평가	추가인력없음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법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하여 기관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아래의 인력기준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점수 결정 기술사 ___ 명 x 10점 + 가인력 ___ 명 x 4점 + 나인력 ___ 명 x 2점 + 다인력 ___ 명 x 6점 = ____ 점 ○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기간 동안 고용 및 자격 유지가 확인되어야 함	

A.2.2. 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3문항)

평가항목 A.2.2.1	평가기준(배점 : 15)	평가결과
기술책임자의 경력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 15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 9
	경력 3년 미만인 경우	☐ 3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요 착안사항	○ 지정 인력 중 최고경력 석면조사자의 석면조사기관 근무 경력을 4대 보험 가입 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 - 산업보건분야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경력평가(A.2.2.2~A.2.2.3 공통 적용) - 유관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서 이전 근무 사업장의 가입내역 확인	

평가항목 A.2.2.2.	평가기준(배점 : 15)	평가결과
조사자의 경력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 15
	경력 2년 이상인 경우	☐ 9
	경력 2년 미만인 경우	☐ 3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요 착안사항	○ 지정인력 중 조사자 인력 전원의 석면조사기관 근무 경력을 4대 보험 가입 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그 평균을 산출하여 평가에 활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서 이전 근무 사업장의 가입내역도 확인	

평가항목 A.2.2.3.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분석자의 경력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 20
	경력 2년 이상인 경우	☐ 12
	경력 2년 미만인 경우	☐ 4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요 착안사항	○ 지정인력 중 분석자의 석면조사기관 근무 경력을 4대 보험 가입 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서 이전 근무 사업장의 가입내역도 확인 * 2명 이상인 경우 평균을 산출하여 평가에 활용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평가항목A.2.3.	평가기준(배점 : 60)	평가결과
직원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충실하게 이행되는 경우	☐ 60
	교육훈련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내용의 일부가 미흡한 경우 또는 이행이 미흡한 경우	☐ 36
	교육훈련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부실하게 이행되는 경우	☐ 12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직원에 대한 훈련이 기관의 방침에 따라 최신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화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교육훈련 계획이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어 있고, 매년 1회 이상 외부 교육 실적이 있으며, 신규직원의 내부교육이 충실하게 이행된 경우 → “60” ○ 교육훈련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교육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이행이 일부 미흡한 경우 → “36” ○ 교육훈련 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거의 이행되지 않는 경우 → “12” ○ 경험없는 신규직원이 경험있는 직원과의 작업을 통한 수습교육(OJT) 없이 입사 후 1개월 내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2”	

A.3. 시설 및 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A.3.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의 적정성(3문항)

평가항목 A.3.1.1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분석실험실 확보 및 장비의 유지관리지침 문서화	☐ 별도의 분석실험실이 있으며, 장비의 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	☐ 20
	☐ 별도의 분석실험실이 있으며, 장비의 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 되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2
	☐ 별도의 분석실험실이 없거나,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	☐ 4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장비가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별도의 분석실험실이 있으며, 장비유지관리지침이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 “20” ○ 별도의 분석실험실이 있으며, 장비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상기 내용의 일부(2개 항목 이하)가 누락된 경우 → “12” ○ 별도의 분석실험실이 없거나, 또는 장비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실(3개 항목 이상)한 경우 → “4”	

평가항목 A.3.1.2	평가기준(배점 : 15)	평가결과
장비대장의 작성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장비대장 작성 및 기록유지가 적절한 경우	☐ 15
	장비대장 작성 및 기록유지가 일부 미흡한 경우	☐ 9
	장비에 대한 장비대장 작성 및 기록유지가 부실한 경우	☐ 3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장비가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평가대상의 100% 적정 → “15” ○ 평가대상 중 2개 이하 부적정 → “9” ○ 평가대상의 3개 이상 부적정 → “3”	

평가항목 A.3.1.3	평가기준(배점 : 15)	평가결과
장비의 관리책임자 지정	장비별 관리책임자가 지정	☐ 15
	장비별 책임자 일부 미지정	☐ 9
	장비별 책임자 미지정 또는 일부 지정	☐ 3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장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장비가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모든 장비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각 장비에 해당 표찰을 부착한 경우 → “15” ○ 평가대상 중 2개 이하의 장비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서화하지 않거나 일부 장비에 해당 표찰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9” ○ 평가대상 중 3개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서화하지 않거나 해당 표찰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3”	

A.3.2. 장비 추가 확보

평가항목 A.3.2.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장비의 구비	전자현미경, X선 회절분석기,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중 추가 장비를 구비한 경우	☐ 30
	필요한 수량의 시료채취펌프를 구비한 경우	☐ 15
	필요한 수량의 시료채취펌프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장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편광현미경 또는 위상차현미경을 1개 이상 추가 확보하거나, 전자현미경 또는 X선 회절분석기를 보유한 경우 → “30” ○ 위 4개 장비중 추가 장비가 없으며, 시료채취펌프 수의 적정성에 이상이 없는 경우 → “15” ○ 위 4개 장비중 추가 장비가 없으며, 시료채취펌프 수의 적정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 “0”	

A.3.3.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실시(3문항)

평가항목 A.3.3.1.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현미경의 점검 및 정상가동	현미경에 대한 점검 및 기록 유지가 충실하게 이행된 경우	☐ 10
	현미경에 대한 점검 및 기록 유지가 일부 미흡한 경우	☐ 5
	현미경에 대한 점검 및 기록 유지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현미경이 정상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장비가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모든 위상차현미경과 편광현미경에 대하여 점검 및 수리를 충실하게 기록유지한 경우 → “10” ○ 위상차현미경과 편광현미경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 경우 → “5” ○ 위상차현미경과 편광현미경 중 하나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점검 및 수리의 기록유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경우 → “0” ○ 위상차현미경 또는 편광현미경이 정상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 “0” (현미경의 점검과 관계없이 점수 부여)	

평가항목 A.3.3.2.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흡후드의 점검 및 정상가동	흡후드에 대한 점검 및 수리, 기록 유지가 충실하게 이행된 경우	☐ 10
	흡후드에 대한 점검 및 수리, 기록 유지가 일부 미흡한 경우	☐ 5
	흡후드에 대한 점검 및 수리, 기록 유지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또는 흡후드가 정상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장비가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흡후드에 대하여 점검, 수리를 충실하게 기록유지한 경우 → “10” ○ 흡후드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점검, 수리를 실시한 경우 → “5” ○ 흡후드에 대한 점검, 수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경우 → “0” ○ 흡후드가 정상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제어풍속 미달 등) → “0” (흡후드의 점검, 수리 충실 여부와 관계없이 점수 부여) * 흡후드 배출구가 실외로 개방되지 아니한 경우 상기 평가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	

평가항목 A.3.3.3.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유량보정기의 교정	유량보정기에 대한 검교정 계획수립 및 이행 적정	☐ 10
	유량보정기에 대한 검교정 계획 미수립 되었으나 검교정 실시	☐ 5
	유량보정기에 대한 검교정 계획 미수립 및 검교정 미실시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장비가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유량보정기에 대한 검교정 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정여부 확인	
평가방법	○ 기관의 검교정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진 경우 → “10” ○ 검교정 계획은 미수립되었으나 교정이 이루어진 경우 → “5” ○ 검교정 미수립, 검교정 미실시, 정상 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 “0”	

A.3.4. 지역시료채취펌프 점검 및 정상 가동

평가항목 A.3.4.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시료채취장비(펌프)의 점검 및 정상가동	펌프에 대한 점검 및 기록 유지가 충실하게 이행된 경우	☐ 20
	펌프에 대한 점검 및 기록 유지가 일부 미흡한 경우	☐ 10
	펌프에 대한 점검 및 기록 유지가 이행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펌프가 정상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장비가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펌프의 점검, 교정 및 수리를 충실하게 기록유지한 경우 → “20” ○ 펌프를 부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리하고 기록유지한 경우 → “10” ○ 펌프의 점검 및 수리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경우 → “0” ○ 5대 중 2대 이상(5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의 펌프가 정상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 “0” (펌프의 점검 및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점수 부여)		

A.3.5. 시약 및 표준시료의 구비 및 보관 적정

평가항목 A.3.5.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시약, 표준시료의 구비 및 보관	시약 및 표준시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고 적절하게 보관된 경우	☐ 20
	시약이나 표준시료 1종이 미구비된 경우	☐ 10
	시약과 표준시료 중 2종 이상 미구비된 경우 또는 부적절하게 보관된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정확한 시험분석을 위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를 구비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시약 및 표준시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고 적절하게 보관된 경우 → “20” ○ 시약이나 표준시료가 1종 미구비된 경우 → “10” ○ 시약과 표준시료 중 2종 이상 미구비된 경우, 또는 분석시료나 폐기물과 함께 부적절하게 보관된 경우 → “0” ○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료(표준시료 등) 보관 시 한단계 하향 평가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가감점 항목)

A.4.1. 평가기간 내 산업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평가항목 A.4.1	평가기준 (가점 : 최대 +10점)	평가결과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① 대통령 포상 : 5점/건 ② 국무총리 포상 : 4점/건 ③ 고용노동부 장관 포상 : 3점/건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포상 : 2점/건 ⑤ 고용노동청·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민간단체상 : 1점/건	_____ 점
주요 착안사항	○ 산업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평가 - 평가기간 내에 산업보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장관, 이사장 등 으로부터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평가	
평가 방법	○ 평가기간 내 산업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을 확인하여 평가 - 안전보건공단 포상 : 교육원장, 인증원장, 연구원장, 본부장, 지사장 - 지자체 포상 :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 평가 당일 피평가 기관에서 제출한 포상 수여 실적 확인	

A.4.2 평가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A.4.2	평가기준 (감점 : 최대 - 80점)	평가결과
평가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 여부	업무정지 처분 _____개월 × - 15점	_____ 점
주요 착안사항	○ 평가기간 내에 석면조사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평가 - 업무정지 처분 개월수 별로 - 15점 적용, 최대 - 80점 평가 -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예시) 업무정지 3.5개월 × -15점 = - 52.5점 ○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환경부 업무정지 처분 실적 집계	

A.4.3 평가기간 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 A.4.3	평가기준 (감점 : 최대 - 20점)	평가결과
평가기간 내 시정조치·경고 처분 여부	시정조치·경고 처분 _____건 × - 2점	_____ 점
주요 착안사항	○ 평가기간 내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평가 -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별로 - 2점 (최대 - 20점) ○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환경부 시정 및 경고 처분 실적 집계	

A.5 종합화(가점 항목)

평가항목 A.5.1.1	평가기준 (가점 : 최대 +10점)	평가결과
컨소시엄 구성 종합기술지원	종합기술지원 실적 : _____건 × 1점 = _____점	_____ 점
주요 착안사항	○ 종합기술지원은 석면의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공기중 농도측정,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여 석면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 ○ 평가 방법 - 석면종합기술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한 실적 평가 · 문서수·발신대장 등을 확인하여 부서내, 또는 타 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시행 여부(업무범위, 내용, 협조기간 등) 평가 · 컨소시엄 구성기관에서 해당분야 석면관련 기술지원을 한 경우 만 인정 ※ 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 동일기관 내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장(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 ※ 동일기관간은 내부결재 문서로 컨소시엄 인정되며 실적의 50% 인정 (0.5점/건) - 종합기술지원 관련 업무 협조체계* 및 실적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모든 실적은 사진, 참석자 서명 등 시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상호 업무 협조 범위, 사업장 지원 계획, 개인 또는 사업장 정보 보안 방안 등 -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실시한 경우 동 평가항목을 0점 처리	

B. 업무성과

B.1. 업무수행 충실성

B.1.1. 기관의 독립성

평가항목 B.1.1.	평가기준(배점 : 60)	평가결과
기관의 독립성	기관의 독립성 유지가 확인된 경우	☐ 60
	기관의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36
	기관의 경영과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12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방법	○ 연간 거래건수 또는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 → “60” ○ 연간 거래건수 또는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있고, 인적 중복은 없는 경우 → “36” ○ 연간 거래건수 또는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있고, 인적 중복이 있는 경우 → “12” * 지정석면조사기관 업무 외에 다른 지정사항(건축물 철거 및 해체·제거업체를 제외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실내공기질측정기관 지정, KOLAS 인정 등)을 보유하여 둘 이상의 수익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정상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 “60” * 50% 이상 차지하는 업체에 대한 인적 중복 여부 증빙 불가 시 → “12”	

B.1.2. 업무수행 실적 및 보고서 관리

평가항목 B.1.2.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업무수행 실적 및 기록물 관리	수탁/계약에 대한 대장이 충실하게 기록유지되는 경우	☐ 30
	수탁/계약에 대한 대장이 기록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의 일부가 미흡한 경우	☐ 15
	수탁/계약에 대한 대장이 기록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수행한 업무의 수탁/계약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수탁/계약대장이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충실하게 기록유지되는 경우 → “30” ○ 수탁/계약대장이 기록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항목 누락 등 내용이 일부 충실하지 않은 경우 → “15” ○ 수탁/계약대장이 기록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대부분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 “0”	

B.1.3. 조사보고서, 농도측정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적정성

평가항목 B.1.3.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적정성	기술책임자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후 문서화 하여 100% 적정 관리한 경우	☐ 20
	기술책임자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후 문서화 하여 80% 이상 관리한 경우	☐ 12
	기술책임자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후 문서화 하여 80% 미만으로 관리한 경우	☐ 4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결과보고서는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서명 또는 결재) 되어야 한다.	
평가방법	○ 기술책임자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후 문서화 하여 100% 적정 관리한 경우 → “20” ○ 기술책임자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후 문서화 하여 80% 이상 관리한 경우 → “12” ○ 기술책임자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후 문서화 하여 80% 미만으로 관리한 경우 → “4”	

B.1.4.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분석방법 숙련도

평가항목 B.1.4.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분석방법 숙련도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	☐ 30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경우	☐ 15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분석자는 석면 고형 및 공기중 시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분석방법과 관련 분석기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2가지 시료 모두에 대해 분석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고, 분석기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 → ‘30점’ ○ 2가지 시료 중 어느 한가지라도 분석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분석기기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경우 → ‘15점’ ○ 2가지 시료 중 모두 분석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분석기기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한 경우 → ‘0점’ ※ 면담대상자 : 석면조사기관 분석 신고인력	

B.1.5.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평가항목 B.1.5.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가 적절한 경우	☐ 10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가 미흡한 경우	☐ 6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가 부실한 경우	☐ 2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시험분석 시 발생한 폐기물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석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가 적절한 경우 → “10” ○ 상기 적정 보관 요건 중 1개 이하의 조치가 미흡 경우 → “6” ○ 상기 적정 보관 요건 중 2개 이상의 조치가 미흡 경우 또는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한 석면폐기물 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2”	

B.1.6. 개인보호구 구비 및 사용

평가항목 B.1.6.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개인보호구의 구비 및 사용	보호구 구비 및 사용이 적절한 경우	☐ 20
	보호구 구비 및 사용이 미흡한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시료채취자 및 분석자를 석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구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상기 모든 보호구가 충분한 수량으로 구비 및 사용이 확인된 경우 → “20” ○ 1종 이상의 보호구가 미구비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 “0”	

B.1.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평가항목 B.1.7.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MSDS 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이 적절한 경우	☐ 10
	MSDS 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이 일부 미흡한 경우	☐ 6
	MSDS 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이 미흡한 경우	☐ 2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시료채취자 및 분석자를 석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를 비치하고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또한, 화학물질 취급장소에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대상의 100% 적정 → “10” ○ 대상의 80% 이상 적정 → “6” ○ 대상의 80% 미만 적정 → “2”	

B.2. 석면조사결과 신뢰도

B.2.1. 석면조사업무 매뉴얼 문서화

평가항목 B.2.1.	평가기준(배점 : 50)	평가결과
업무 매뉴얼의 문서화	모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문서화된 경우	☐ 50
	업무 매뉴얼 문서화가 일부 미흡한 경우	☐ 30
	업무 매뉴얼 문서화가 부실한 경우	☐ 1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규정된 석면조사, 측정, 분석의 기준을 이용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작업완료의 확인방법, 시료채취 방법, 분석 방법 등 업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고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상기 모든 업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 “50” ○ 일부(1종 이하) 업무 매뉴얼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 매뉴얼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30” ○ 2종 이상의 업무 매뉴얼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 “10”	

B.2.2. 시료채취 방법의 적정성(3문항)

평가항목 B.2.2.1.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석면조사의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 실시 기록물 또는 자료를 충실하게 보관한 경우	☐ 20
	예비조사 실시 기록물 또는 자료를 보관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2
	예비조사 실시 기록물 또는 자료를 보관이 부실한 경우	☐ 4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관찰 사항 및 자료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2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12”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4”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완료후 농도측정 석면배출농도측정 완료후 농도측정 + 석면배출농도측정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평가항목 B.2.2.2.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균질부분의 구분과 석면함유의 적정 추정	균질부분의 구분과 석면함유의 추정이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30
	균질부분의 구분과 석면함유의 추정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8
	균질부분의 구분과 석면함유의 추정이 부실한 경우	☐ 6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조사대상 건축물등의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3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또는 내용의 일부가 미흡 → “18”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또는 내용이 부실함 → “6”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완료후 농도측정 석면배출농도측정 완료후 농도측정 + 석면배출농도측정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평가항목 B.2.2.3.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시료의 보존	시료의 보존이 충실한 경우	☐ 30
	시료의 보존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8
	시료의 보존이 부실한 경우	☐ 6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관찰 사항 및 자료는 정보의 손실 및 향후 품질보증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평가방법	○ 시료의 보존이 평가 대상 100% 적정 → “30” ○ 시료의 보존이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18” ○ 시료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료대장의 일련번호가 미기재된 경우 → “18” ○ 시료의 보존이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6”	

B.2.3. 시료채취 수 준수(2문항)

평가항목 B.2.3.1.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고형시료 채취 시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	고형시료 최소 시료채취 수를 준수한 경우	☐ 10
	고형시료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가 일부 미흡한 경우	☐ 6
	고형시료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가 부실한 경우	☐ 2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조사대상 건축물등의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 균질부분에 대한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 여부 평가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1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또는 내용의 일부가 미흡 → “6”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또는 부실함 → “2”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완료후 농도측정	
	석면배출농도측정	
	완료후 농도측정 + 석면배출농도측정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평가항목 B.2.3.2.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농도측정 시 최소 시료 채취수의 준수	최소 시료채취 수를 준수한 경우	☐ 10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가 일부 미흡한 경우	☐ 6
	최소 시료채취 수 준수가 부실한 경우	☐ 2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 시 각 작업장별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른 최소 시료채취 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석면조사기관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비산정도 측정시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서 석면비산계획 방지 내용에 따라 시료채취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1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6”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2”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석면조사 석면배출농도측정 석면조사 + 석면배출농도측정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B.2.4. 시료채취 전·후 유량보정 수행 및 결과반영

평가항목 B.2.4.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유량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유량보정이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30
	유량보정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8
	유량보정이 부실한 경우	☐ 6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공기중 석면시료 채취 전·후 펌프 유량보정을 통한 보정결과 반영적정성 평가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3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18”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6”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석면조사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B.2.5. 석면농도 측정방법의 적정성(2문항)

평가항목 B.2.5.1.	평가기준(배점 : 50)	평가결과
석면농도 측정 기록물	석면농도 측정 기록물을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 50
	석면농도 측정 기록물 작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30
	석면농도 측정 기록물 작성이 부실한 경우	☐ 1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관찰 사항과 자료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조사 및 분석 포함).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5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30”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10”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석면조사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평가항목 B.2.5.2.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현장 공시료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충실한 경우	☐ 20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2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부실한 경우	☐ 4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시료의 오염 여부 및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측정용 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현장 공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2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12”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4”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석면조사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B.2.6. 작업완료의 확인 실시

평가항목 B.2.6.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작업완료의 확인 실시	작업완료의 확인이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20
	작업완료의 확인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2
	작업완료의 확인이 부실한 경우	☐ 4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관찰 사항 및 자료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평가방법		
○ 평가 대상 100% 적정 → “20” ○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12” ○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4”		
구분	수행 업무 분야*	
평가 제외 기관	석면조사	
	석면배출농도측정	
	석면조사 + 석면배출농도측정	
* 수행 업무분야의 업무만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항목 평가 제외함		

B.2.7. 석면분석 방법의 적정성

평가항목 B.2.7.1.	평가기준(배점 : 30)	평가결과
분석시료대장의 작성	분석시료대장을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 30
	분석시료대장 작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18
	분석시료대장 작성이 부실한 경우	☐ 6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시료를 고유하게 식별하여 어느 때라도 품목을 확인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조사 및 분석 포함).	
평가방법	○ 분석시료대장이 기록관리되고 평가 대상 100% 적정 → “30” ○ 분석시료대장이 기록관리되고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18” ○ 분석시료대장이 기록되지 않거나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6”	

평가항목 B.2.7.2.	평가기준(배점 : 50)	평가결과
분석 기록물의 작성	분석기록물을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	☐ 50
	분석기록물 작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30
	분석기록물 작성이 부실한 경우	☐ 1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수집된 관찰 사항과 자료는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조사 및 분석 포함).	
평가방법	○ 분석기록물이 기록관리되고 평가 대상 100% 적정 → “50” ○ 분석기록물이 기록관리되고 평가 대상 80% 이상 적정 → “30” ○ 분석기록물이 기록되지 않거나 평가 대상 80% 미만 적정 → “10”	

B.3. 분석능력 신뢰도

B.3.1. 기관의 석면분석 정도관리 결과

평가항목 B.3.1.	평가기준(배점 : 40)	평가결과
정도관리 결과	평가기간 내 부적합이 없는 경우	☐ 40
	평가기간 내 1회 부적합한 경우	☐ 20
	평가기간 내 2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 0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실시한 분석의 유효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품질관리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실험실 간 비교를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은 숙련도 평가 참여를 통하여 분석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파악한 후 시정 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최근 2회 중 부적합이 없는 경우 → “40” ○ 최근 2회 중 1회 부적합한 경우 → “20” ○ 최근 2회 중 2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 “0”	

B.4. 업무수행 실적

B.4.1. 석면조사 업무수행 실적

평가항목 B.4.1.	평가기준(배점 : 20)	평가결과
업무수행 실적	업무수행 실적이 50건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0
	업무수행 실적이 50건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2
	업무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4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석면의 조사 또는 농도측정 등 기관 지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연간 업무수행 실적이 50건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0” ○ 연간 업무수행 실적이 50건 미만이며 매출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2” ○ 연간 업무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4”	

B.5. 고객 만족도

B.5.1. 석면조사 사업장 만족도

평가항목 B.5.1.	평가기준(배점 : 10)	평가결과
석면조사 사업장 만족도	평가점수 합계 9점 이상	☐ 10
	평가점수 합계 8점 이상 ~ 9점 미만	☐ 8
	평가점수 합계 7점 이상 ~ 8점 미만	☐ 6
	평가점수 합계 6점 이상 ~ 7점 미만	☐ 4
	평가점수 합계 6점 미만	☐ 2
평가취지	○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 또는 임차인에게 석면조사 결과 설명 및 법적절차를 안내하고 사업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